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18 · 12 · 31 조례 제1449호 일부개정 2021 · 12 · 28 조례 제1799호 전부개정 2022 · 12 · 28 조례 제1885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라 아동 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친화도시"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 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·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.
- 3. "아동의 권리"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.
 - 가. 생존권: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,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
 - 나. 보호권: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, 차별,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 - 다. 발달권: 신체적, 정서적, 도덕적,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, 여가, 정보,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
 - 라. 참여권: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
- 4. "아동영향평가"란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- 5. "아동참여예산"이란 아동이 정책제안, 의견수렴, 사업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.
- 6. "아동권리 옴부즈퍼슨"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·증진하거나 아동의 권리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- 7. "아동권리 모니터링"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,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,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,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정책 등

- 제4조(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)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.
 - 1. 모든 아동은 인종·종교·성별·나이·학력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.
 - 2.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3. 아동은 보육·교육·의료·여가·문화생활·노동·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
 - 4.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,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 록 보장되어야 한다.
 - 5. 아동은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, 아동이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6.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
 - 2.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
 - 3.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
 - 4.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
 - 5.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
 - 6.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시민·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) ① 시장은 도로·교통·공원·녹지·사회복지시설 등 각 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아동 보행 편의·접근성·안전성 등 검토
 - 2.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
 - 3.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
 - 4.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아동 안전시스템 구축)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
 - 2.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8조(아동의 교육·여가·문화생활)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·여가·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아동 건강증진)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)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시설 종사자, 아동의 보호자, 공무원, 의료·법률 관련자,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,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아동 참여보장)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아동정책 전담부서)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 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국제연합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「아동복지법」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.
- 제13조(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) ① 시장은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
 - 2.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
 - 3.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
 - 4.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·연수 및 홍보
 - 5.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
 - 6. 아동의 안전·건강 등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
 - 7. 아동참여예산 사업
 - 8.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 사업

- 9.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
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)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,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

- 제16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제1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
 - 2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3.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·홍보 및 지식·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
 - 4.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 - 5.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 - 6. 제43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제1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, 교육·청소 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- 1.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- 2. 관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소속 아동·청소년 관계 공무원
- 3.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
- 4. 교육, 법률, 경찰, 체육, 문화 등 분야에서 아동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5. 아동관련 기관·단체 대표
- 6.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호자
- 7.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- ④ 본 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- 제1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2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
 - 3.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 - 4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- 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

-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-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24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- 제25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

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

- 제26조(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설치)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업무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두어야한다.
- 제27조(추진단의 구성) ①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업 무 담당 국장이 된다.
 - ② 추진단의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 - ③ 추진단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
- 제28조(추진단의 기능)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
 - 2.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
 - 3.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
 - 4.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정책제안사항 검토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
 - 5.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
- 제29조(추진단의 회의) ①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- ② 추진단의 단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30조(실비 등)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아동참여위원회

제31조(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천시 아

동참여위원회(이하 "아동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2조(기능)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·시행 및 분석·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
- 2.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
- 3. 아동참여예산에 대한 심의
- 4.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
- 5.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
- 6.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·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
- 7.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
-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시장은 아동위원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아동위원회 구성) 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아동위원장"이라 한다)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"아동부위원장"이라 한다)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아동위워장과 아동부위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(이하 "아동위원"이라 한다)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 -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,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, 성별,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 이 경우, 아동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 - 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자가 된다.
- 제34조(아동위원의 임기)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35조(아동위원장의 직무)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, 아동위원회의 사

무를 총괄한다.

-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,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36조(아동위원회 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 - ③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.
 -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 -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.
- 제37조(아동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아동위원의 학업,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3.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
 - 4.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38조(아동분과위원회)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(이하 "아동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39조(아동위원회 지원 등) ① 아동위원회 및 아동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

-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40조(위탁)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장 아동영향평가

- 제41조(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
 - 2.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2조(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·조정)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- 1. 아동영향평가 등 수립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
 - 2.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
 - 3.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, 아동의 권리를 보장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제43조(아동영향평가 실시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·규칙, 계획, 정책 또는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.
 - 1.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·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

- 2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
- 3.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시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1.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,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- 2.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 한 경우
- 3.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
-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, 방법,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4조(아동권리 모니터링)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(이하 "모니터링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제7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

- 제45조(위촉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(이하 "옴부즈퍼슨"이라 한다)을 위촉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아동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2.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
 - 3. 아동 인권 및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
 - 4.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·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

-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
- 5. 그 밖에 아동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
- 제46조(기능)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,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
 - 2.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, 제도, 법령,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
 - 3.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해당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활동(인 터뷰 등 조사,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)
 - 4.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발굴, 모니터링 및 제언
 - 5.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
 - 6. 그 밖에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
 -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전략과제 추진 및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7조(임기 및 해촉)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
 - 2.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질병, 개인 사정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4.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
 - 5.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 - 6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48조(옴부즈퍼슨 활동수당)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〈2022·12·28 조례 제1885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이천시 아동친화도시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본다.
 -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아동 옴부즈퍼슨은 제45조에 따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그남은 기간으로 한다.